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. 3. 11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. 3. 12

다. 상 정 일 자 : 제49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위원회('96. 3. 2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주강우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공직사회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,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①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7조 제2항)
- ②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
- ③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 제5호 및 제6호)
- ④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 제5항 제5호)
- ⑤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토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기본규정인 공무원 복무조례에, 당직근무이외 비상상태 또는 이에 대비한 훈련시에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유사시 대처능력 함양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것이며,
- 민원인 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중식시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경로효친 정신을 고양하고 이의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연가일수 및 연가 미실시자에 대한 보상일수를 확대하고,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 근속휴가 실시, 주요시책, 사업 등의 추진에 큰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한 것 등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- 종전 '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'이 '95. 12. 14일자로 '국가공무원 복무규정'으로 개정되므로써, 현행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종전의 '공무원 복무규정'을 준용 하던 부분인 공무원의 '정치적 행위'의 범위를 본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공가의 범위 추가 각종 휴가명칭의 명확한 구분, 기타 불합리 하거나 불분명한 문구 또는 내용의 합리적인 보완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